

대전지방법원 2024. 10. 31 선고 2024가단4756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 2024. 10. 24.

판결 선고 2024. 10. 3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나. 2023. 7. 20.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1,76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이종광

별지